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19조3에 따른 대학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, 제4호, 제6호는 자문한다.

- 1. 대학의 발전계획안에 관한사항
- 2. 대학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6. 대학의 예·결산에 관한사항
- 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수회가 선출한 평의원 4인
- 2. 직원회가 선출한 평의원 2인
- 3. 학생회가 선출한 평의원 1인
- 4. 교외 평의원 4인(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문 및 인사)
-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.
-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.

제4조(위촉)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
-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③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학생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④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원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6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,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회의)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.

-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.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- 제9조(회의록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출석 및 자료제출)**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비밀유지)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제13조(간사)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-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.<개정 2017.09.25>
 -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

- 제14조(개방이사 추천) ① 의장은 법인정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개방이사 후보자)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.
 - ②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 -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6조(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)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- 제17조(개방감사 추천) 의장은 법인정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감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서 법인에 대상인원의 단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17조의2(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 및 운영) ① 추천위원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 -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
 - 2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
 -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18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내규) 평의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- 제2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 칙(2007. 2. 12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1) 제4조제1항의 교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.
 - 2) 제4조제2항의 직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노동조합 및 직원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